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2. 9.
사회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2021년 11월 15일
- 나. 제출자: 영등포구청장
- 다. 회부일자: 2021년 11월 19일
- 라. 상정일자: 제234회 영등포구의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1. 11. 23.)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복지국장 이영환)

- 가. 제안이유
 - 「아동복지법」 개정(개정 '20. 12. 29. / 시행 '21. 6. 30.)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재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안 제2조의2)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원배)

- 「아동복지법」 개정(시행 '21. 6. 30.)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

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재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주요 내용은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 안 제2조의2에서는 상위법령인 「아동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신설하였음.

○ 본 조례안은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기준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어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20 호
----------	---------

제출연월일: 2021. 11. .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아동복지법」 개정(개정 '20. 12. 29. / 시행 '21. 6. 30.)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을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기능 및 구성 정비(안 제2조, 안 제3조)
- 나. 사례결정위원회 설치(안 제2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아동복지법」
-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1. 10. 14. ~ 11. 1. / 18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3조제1항 중 “10명”을 “15명”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제10조 중 “제2조제2호”를 “법 제12조제1항제2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u>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u></p> <p>2.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p> <p>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p> <p>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p> <p>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p> <p>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p> <p>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신 설></p>	<p>제2조(기능) ----- ----- --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 -----.</p> <p><삭 제></p> <p>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p>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
----- 15명

----- .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다.

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부교육지원청 또는 영등포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제2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10조(우선조치) ----- 법 제12조 제1항 제2호-----

-----.